

### **군인 경력환산율표**

구분	경력	호봉 획정 대상별 환산율		
		장 교	준사관	부사관
가. 군인경력	1)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2)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3)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4)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5) 「군인보수법」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. 다만,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.	10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80퍼센트 50퍼센트	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	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
나. 군인 외 공무원경력	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. 다만,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)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. 2) 고용직(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 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)으로 근무한 기간	80퍼센트  60퍼센트	90퍼센트  70퍼센트	100퍼센트  80퍼센트
다. 유사경력	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	60퍼센트	70퍼센트	80퍼센트